일반촬영용장치(RADNEXT, CANON DETECTOR, EVOLUTION)
유지보수위탁용역 과업지시서

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

1. 사업개요

가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일반엑스선촬영장치(디지털)의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, 신속한 복구와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과업기간

- 2027년 1월 1일 ~ 2027년12월31일(12개월)

다. 대상장비

장 비 명	모 델	제조사	수량	비 고
일반엑스선촬영장치(디지털)	Radnext 80	HITACHI	1	
일반엑스선촬영장치(디지털)	Radnext 50	HITACHI	1	
일반엑스선촬영장치(디지털)	DRX-Evolution Plus	Carestream	1	

2. 과업내용

가. 유지보수 대상

- 유지보수 대상은 “대상 장비” 내역의 일체를 말한다.
-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“발주기관”의 해당 장비가 위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실시한다.

나. 유지보수 내용

- RADNEXT 2대, CANON DETECTOR 4대, EVOLUTION 1대에 관련된 모든 부품을 공급한다.
- CANON Detector 4대와 Workstation 2대도 포함하여 관리한다.
- 예방 점검 및 수리 과정에서 부품 추가가 필요할 경우 병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필요한 작업을 실시한다.
- 사용하는 부품은 장비의 성능 및 수명을 참작하여 주요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의 순정 부품으로 한다.
- 병원으로부터 긴급 장비 수리 요청시는 접수 후 이동시간 포함 24시간 이내에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, 수리요청 접수는 7일 24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해당업체는 년 간 가동률 90%(일반 산정 기준)를 유지하며, 365일 24시간 서비스

접수를 받아야 하며, 이 접수는 일반 상담원이 아닌, 해당 장비를 직접 관리한 엔지니어가 지원 하여야 한다.

- 무상기간 중 연1회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plication training을 실시한다.
- ㈜JW메디칼에서 정식 허가된 장비의 판매 및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기술지원 및 어플리케이션(이미지 최적화 작업 및 교육)을 지원한다.

3. 유지보수비 및 청구

가.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비, 인건비등 일체의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
나. 유지보수료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다. 각종 신고에 따른 외부업체 검사 및 신고비용은 “발주기관”이 부담한다.

4. 부품 사용 및 교체

가. 정비보수의 내용은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을 포함하며 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품(제조사정품)으로 하며, 교체되어 나온 폐부품은 "계약상대자"의 소유로 한다. 단, 장비의 성능 및 수명을 참작하여 주요부품은 반드시 순정부품(제조사 정품)을 사용하여야 한다.

나. 제조사 정품 부품 미사용 시 과업기간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.

5.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

가. “계약상대자”의 고장 수리 지연 또는 예방 정비 소홀로 인하여 “발주기관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“계약상대자”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 이때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이 진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. 진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“발주기관”의 계산에 따른다.

나. 단, 천재지변 등 “발주기관”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와 “발주기관”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6. 계약해지

가. 계약 불이행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을 문서로 지적한 후 20일이 경과 하여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통지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지서 발송일 다음날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.

나. 계약기간 내에서도 "발주기관"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장비가 운용되지 못할 때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. 다만, “발주기관”은 계약 해지 사실을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사전 통지해 주어야 한다.

다. 계약 해지 시에 잔여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채권, 채무를 정산하고 정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한다.

7. 분쟁처리

가.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.

나.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"발주기관"의 주소지들이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